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어려운 교육환경의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업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기위하여 저소득주민 자녀기금의 존치가 필요함.

3. 주요내용

○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(안 제7조3)

- 존속기한: 2019년 12월 31일 → 2024년 12월 31일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규제심사 : 원안가결[기획감사실-8736(2019.9.2.)]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체크리스트 제출[가족지원과-35649(2019.9.2.)]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 : 2019. 9. 19.~2019. 10. 10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저소득 자녀장학금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어려운 교육환경의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업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본 조례의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해당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